

대전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 방안과 활성화 과제

사회복지분야 비영리조직의
사회적기업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권지훈 마을과복지연구소 대표

..

1. 들어가는 말: 사회적기업의 배경과 사회적 추세

사회적 경제는 국가의 계획에 따른 공공 서비스의 제1부문과 민간상업시장의 제2부문, '호혜'와 '자조'의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제3부문의 영역에서 주로 제3부문의 비영리조직들이 시장지향적인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이념, 조직, 활동들을 포괄한 개념과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장원봉, 2006, 39). 사회적 기업은 고대부터 근대 산업혁명(혹은 coup d'Etat!) 이전까지 사회의 근간이던 사회적 경제활동, 즉 '호혜'와 '자조'의 경제를 복원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확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된 과정에는 1970년대와 80년대 개발독재시절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탄생한 도시 빈민과 빈민노동자들에 의한 '생산공동체 운동'과 이를 모태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빈민노동운동과 성공회 등의 자활운동,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자 급증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실업극복국민운동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 운동, 당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기조에 따른 국

민기초생활법의 제정으로 본격화된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 급증한 실업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임시적으로 확대 실시한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 2003년도부터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고용노동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004년도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인 자활후견기관(현 지역자활센터) 진영의 컴퓨터재활용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컴윈'¹⁾ 등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민과 시범적인 시도의 과정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서비스와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수요, 생산과 참여라는 형평과 균형을 주요한 정책기조로 삼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민간조직들의 노력이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자동화, 국제화, 아웃소싱, 자영업 붕괴라는 산업 환경의 변화는 국가와 개별 기업의 부를 늘려주고 있지만 고용은 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취약계층만 양산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며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 빈곤층의 극빈층 추락과 함께 사회 갈등을 갈수록 격화시키고 있다.

반면 개인과 가족의 입장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확대된 노인의 취업욕구와 돌봄과 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였으며, 여성의 경제와 사회 활동 참여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의 일반적인 가족의 요구와는 다른 새롭고 확대된 보육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교육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고착화된 핵가족화로 가족 구성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와 문제의 충족과 해결을 국가나 외부 시장의 공급자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세계적, 국가적, 지역적인 추세와 개인과 가정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게 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투입 규모의 최소화 와 효율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쪽과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을 동시에 수용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목적을 양립할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2005년 사회적기업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

1) 2003년 경기도의 안산자활후견기관, 대전의 서구자활후견기관, 중구자활후견기관, 대구의 달성자활후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컴윈'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이전에 자활진영에서 시도한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었으나 사회적 기업의 해계모니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옮겨가면서 그 역사적 의의는 지워지고 현재는 고용노동부 인종(2007-033호) 사회적 기업으로만 남아있다.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안이 발의되었으며, 2006년 12월 8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7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과 함께 맞게 된 세계금융위기는 정부에 의한 고용 창출을 재차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비공식부문의 일자리가 증대하고 그 일자리마저 유지하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제공이 사회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다.

정부(고용노동부)와 시장,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각의 시각과 지향점에 따라 체감의 정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며,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과 착한 소비문화조성으로 윤리적 시장을 확산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을 구현(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go.kr>))'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부의 입장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 사회적 자본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성장의 분배가 비효율적임은 물론 사회 전반의 동의와 만족도도 떨어지는 소위 '질 낮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양산할 뿐이라는 쪽과, 성장의 분배가 여전히 부족하며 정부가 공공 부문이 책임져야 할 사회서비스를 외면하고 오히려 시장의 영역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쪽 모두 사회적기업에 대한 불안과 의심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즉, 양자 모두 사회적기업 스스로가 내부에 부족한 자본력, 경영능력의 미흡, 인적자원의 취약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법과 제도 안에 사회적기업을 묶어 두어서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다양성, 가능성, 지속성을 저해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 혹은 일자리 수 늘이기를 우선하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와 시장 활동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자체에 대해 아예

부정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을 위한 정부와 시장, 민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적 상호의존은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사회적 목적이 스스로 이루어지도록 시장에 일임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적기업이야말로 정부도 시장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서비스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완충'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대전에서는 사회복지분야 비영리조직의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지면 서도 사회복지분야의 사회적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인증 숫자,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조직형태, 사업유형 등 일반적인 현황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다 엄밀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지역 대전의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자원 현황 확인을 통해 대전의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사회의 신뢰와 참여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2. 대전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특성

1) 대전지역 사회적기업의 현황

[표 1]은 우리나라의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이다.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인증 신청을 한 기관은 총 1,062개소이며, 인증 취소 및 반납, 폐업을 제외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총 501개소(인증률 51.45%)에 달한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수는 2007년 50개소에서 매년 2배씩 확대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신규로 25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을 전망이다. 매년 사회적기업의 인증 개소 수 증가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지원의 규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1] 연차별 사회적기업 인증현황(2010년 12월 현재)

년도	계	단위: 개, %				
		2007	2008	2009	2010	반납/폐업
인증수	501	50	99	149	203	13

주)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은 제외한 숫자임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go.kr>) 자료를 재정리함.

그런데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인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옥석(玉石)을 가리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인건비 등 지원이 끊기면 사회적기업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유지해도 자생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상당수가 옥이 아니라는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생사여탈권인 법과 제도, 예산과 인증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사회적기업의 사회성이 정부의 공공성 안에서만 작동해야 하는 것인지,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인증제도 중심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역량과 시장자생력 강화로 선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2]는 지역(광역시도)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이다. 지역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을 보면 주로 서울(113개소, 22.6%)과 경기(89개소, 17.8%), 인천(33개소, 6.6%)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전광역시(2010년 4월 현재 인구 1,487,266명,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의 경우 11개소(2.2%)로 비슷한 인구인 광주광역시(2010년 4월 현재 인구 1,436,374명)의 사회적기업 16개소(3.2%)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인구 563,808명(2010년 4월 현재)인 제주특별자치도가 11개소로 대전광역시와 같은 수로 나타나 대전광역시의 사회적기업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차는 사회적기업이 단순한 인구수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해, 자생적·자발적인 사회적 경제 자원의 규모와 네트워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설치에 필요한 민과 관의 여건과 의지 등이 고루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전시의 사회적기업 현황은 [표 3]과 같다.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11개소이지만, 사회적기업 기반조성 및 전환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과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총 32개소가 있다.

[표 2] 지역별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2010년 12월 현재)

단위 : 개, %

지역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경기
개 수	113	25	33	16	11	23	16	89
비 율	22.6	5.0	6.6	3.2	2.2	4.6	3.2	17.8

지역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개 수	31	23	17	23	20	24	26	11
비 율	6.2	4.6	3.4	4.6	4.0	4.8	5.2	2.2

주)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은 제외한 숫자임.
 자료 : 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socialenterprise.go.kr>) 자료를 재정리함.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6개월~1년)으로 참여자의 인건비와 경영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8개소가 있다.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과 행정안전부의 지역플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의 법률상 인증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현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 및 인증 가능성을 지닌 '예비 사회적기업'을 광역시·도별로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유예 기간 내에 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2010년도에 지정한 10개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7개소를 2011년도에 재지정하고, 6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13개소가 있다.

[표 3] 대전의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2011년 5월 현재)

단위 : 개

(예비) 사회적기업	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 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대전광역시)	
				2010(재지정)	2011(신규)
개 수	32	11	8	7	6

자료 : 고용노동부·(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501』, 2011,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대전사회적기업지원기관 내부 자료를 재정리함.

[표 4]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분류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은 크게 4가지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의 혼합형, 기타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타형 등이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제1항 제3호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그런데 인증 사회적기업의 56.9%인 285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제공형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혼합형을 포함하면 378개소(66.0%)가 주된 사회적 목적을 일자리제공을 실현하는데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주로 일자리 제공형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이 만족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어떤 유형이든 간에 취약계층의 사회, 문화, 경제적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기업이 시장과 정부의 논리에 따라 단순한 일자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될 경우 취약계층의 여타 사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2010년 12월 현재)

단위: 개, %

사회적 목적	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개 수	501	285	44	93	79
비율	100	56.9	8.8	18.6	15.8

자료: 고용노동부·(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50』 자료를 재정리함.

한편 대전의 (예비)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 유형은 [표 5]와 같다. 우선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 유형별로는 일자리 제공형이 4개소(36.4%),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1개소(9.1%), 혼합형이 6개소(54.5%)로 나타났다. 전국의 인증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 유형과 비교하면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수가 4개소(36.4%)로 적었으나, 혼합형 6개소(54.5%)를 포함하면 10개소(90.9%)로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한시적으로 지정받는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과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목적 실현 유형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참여자와 사업내용을 토대로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2개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이 4개소(50.0%),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4개소(50.0%)로 나타났으며, 대전시에서 지정한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 13개소는 일자리 제공형이 11개소(84.6%),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2개소(15.4%)로 일자리 제공형이 전국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대전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역시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보다는 일자리 제공을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대전의 (예비) 사회적기업 목적 실현 유형(2011년 5월 현재)

단위 : 개, %

사회적 목적	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11	4	1	6	-
	100	36.4	9.1	54.5	-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8	4	4		
	100	50.0	50.0		
예비 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지정)	13	11	2		
	100	84.6	15.4		

자료 : 고용노동부·(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501』, 대전사회적기업지원기관 및 대전마을기업교육컨설팅기관 내부 자료를 재정리함.

[표 6]은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이다.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의 회사는 209개소(41.7%)이고, 민법상 법인(주로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292개소(58.3%)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 등 민법상 법인이 125개소(25.0%), 비영리민간단체가 89개소(17.8%), 사회복지법인 59개소(11.8%), 생활협동조합 13개소(2.6%), 영농조합 5개소(1.0%)다.

[표 6]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2010년 12월 현재)

단위: 개, %

조직형태	계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
개 수	501	125	209	89	59	13	5
비 율	100	25.0	41.7	17.8	11.8	2.6	1.0

자료: 고용노동부·(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501」를 재정리함.

한편 대전의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표 7]과 같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대전시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두 포함할 때 상법상의 회사 수가 13개소(40.6%)이고, 사단법인 11개소(34.4%), 사회복지법인 6개소(18.8%), 생활협동조합 2개소(6.2%)로 상법상의 회사수가 가장 많다.

[표 7] 대전의 사회적기업 조직형태(2011년 5월 현재)

단위: 개, %

사회적 목적	조직 형태	계	사단 법인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생활협동 조합	영농 조합
계	개 수	32	11	13	-	6	2	-
	비 율	100	34.4	40.6	-	18.8	6.2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개 수	11	3	5	-	2	1	-
	비 율	100	27.3	45.4	-	18.2	9.1	-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개 수	8	4	-	-	3	1	-
	비 율	100	50.0	-	-	37.5	12.5	-
예비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개 수	13	4	8	-	1	-	-
	비 율	100	30.8	61.5	-	7.7	-	-

주1) [표 6]의 고용노동부에서 분류한 민법상 법인은 사단법인, 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였으나, 이 표에서는 사단법인과 생활협동조합을 구분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은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과 사업단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모두 포함함.

주2)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를 모두 포함함.

주3)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전 시점의 모기관 및 단체 정보는 제외함. 기타 세부 자료는 대전광역시, 대전사회적기업지원기관, 대전마을기업교육컨설팅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501」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대전사회적기업지원기관 및 대전마을기업교육컨설팅기관 내부 자료를 재정리함.

그런데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볼 때는 상법상의 회사가 가장 많으나 이들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증에 관여한 모기관(법인이나 시

설)을 확인해보면 전국이나 대전광역시 공히 비영리법인의 수가 월등히 많아진다. 상법상 회사인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기존의 영리기업(회사)이 인증을 받은 것보다는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 비영리조직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대전시의 (예비)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를 확인해보면 전체 상법상 회사 13개소 중 9개소가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 산하 사회복지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대표 및 관리자 역시 모기관의 대표와 관리자, 사업단 참여자가 맡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주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구분하면 총 32개의 (예비) 사회적기업 중 교육, 환경, 문화예술 및 관광운동 분야 사회적기업을 제외해도 24개소 (75.0%)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또한 1개 사회복지법인이 3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였거나 인증에 참여한 경우도 확인된다. 이는 사회복지조직(법인이나 시설), 사회복지사(종사자나 사업단 참여 주민)가 대전시의 사회적기업 확산과 성장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전시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의 역량,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 등 사회적기업 접근의 폭이 좁고 참여의 통로가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 8]은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501개소를 사업유형별로 구분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보다 일자리 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타(일반제조 및 식품제조), 환경, 문화예술 및 관광운동, 간병 및 가사 사업이 월등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2010년 12월 현재)

단위: 개, %

사업 유형	계	사회 복지	교육	보건	환경	문화예술 관광운동	보육	간병 가사	산림	기타	
										일반제조	식품제조
개수	501	48	24	11	85	67	28	59	0	50	54
비율	100	9.6	4.8	2.2	17.0	13.4	5.6	11.8	0.0	10.0	10.8

주)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등 도시락 제조업체들은 2010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무료 도시락) 제공으로 사회복지로 분류되었으나, 2011년도부터 기타업종의 도시락 제조로 포함하였다 함.

자료: 고용노동부·(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50』, 재경리

그런데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수의 고용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시설과 장비 등의 투자비용이 낮거나 사용과 이용이 쉽고, 비교적 빠르게 기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제도 바깥의 동일업종과의 인건비 지원, 보호된 시장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거나, 사회적기업 육성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까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비영리 조직형태의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와 일자리 수의 총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 유형이라면 사회적기업의 방향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는 것에서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 확보로 선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는 영리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인증 기준에 따라 영리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춘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사회서비스의 증진과 일자리의 지속성에 맞지 않다면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비영리조직에게 일자리 창출과 시장 경쟁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취약계층 당사자의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에도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대전의 사회적기업 사업 유형은 [표 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환경 분야 9개소(28.1%)와 식품제조 등 기타 분야 9개소(28.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분야 5개소(15.6%), 간병가사분야 2개소(6.25%)의 순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체 11개소중 사회복지분야가 5개소(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은 8개소에서 사회복지, 보건, 보육분야가 전무한 가운데 여타분야가 고르게 나타났다.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3개소에서 사회복지, 보건, 보육, 간병가사 분야가 전무하고 가장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하나인 환경(폐자원 재생 및 재활용품 수거)분야가 6개소(46.2%), 기타(제조업) 분야가 5개소(38.5%)로 나타나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으로 일자리 제공이 사회서비스 제공에 우선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전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확대를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표 9] 대전의 사회적기업 사업 유형(2011년 5월 현재)

단위: 개, %

구분	사업 유형	계	사회 복지	교육	보건	환경	문화·예술 관광·운동	보육	간병 가사	산림	기타	
											일반제조	식품제조
계	개수	32	5	2	1	9	4	-	2	-	2	7
	비율	100	15.6	6.3	3.1	28.1	12.5	-	6.25	-	6.25	21.9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개수	11	5	1	1	1	-	-	1	-	-	2
	비율	100	45.5	9.1	9.1	9.1	-	-	9.1	-	-	18.2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개수	8	-	1	-	2	2	-	1	-	-	2
	비율	100	-	12.5	-	25.0	25.0	-	12.5	-	-	25.0
예비사회적기업 (대전광역시)	개수	13	-	-	-	6	2	-	-	-	2	3
	비율	100	-	-	-	46.2	15.4	-	-	-	15.4	23.1

주) 환경사업은 9개소 모두 폐자원 재생 및 재활용품 수거 사업임.

자료: 고용노동부·(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50』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대전사회적기업지원기관 및 대전마을기업교육컨설팅기관 내부 자료를 재정리함.

2) 대전지역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한계

앞에서 살펴 본 대전지역 사회적기업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에 의해 설립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사업 유형을 9가지로 구분했지만,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에도 보건, 보육, 간병 및 가사,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 등) 일자리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 자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등이 수행해 온 활동이다. 대전시의 (예비) 사회적기업은 주로 사회복지관 등에서 수행한 정부의 민간위탁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작업장’, 시니어 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 등이 바탕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참여 및 이용 주민)사가 그 원동력이 되었다.²⁾

2) 사회복지법인(시설)이나 사단법인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지정받은 세부적인 정보는 제외하였으나, 대전광역시, 대전사회적 기업지원기관, 대전마을기업교육컨설팅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에 의해 설립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많은 대전시의 경우, 이러한 강점을 살려 사회적기업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가정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임금이 적절한 일자리, 시장에서의 경쟁보다 조화와 호혜를 이루는 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달성하고,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서비스에 대한 지불능력이 낮거나 없어서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이 오히려 취약계층이기에 더 따스하고 섬세한 사회서비스를 권리로서 당당히 받도록 하여,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단절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대전시의 사회복지조직(법인, 시설,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로 역할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정착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대전시와 시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이 좁고, 접근과 참여의 통로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대전시의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방법을 알리는 일이 사회적기업(가) 당사자는 물론, 협의조정조직인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 중간지원기관인 대전사회적기업지원기관, 보장기관인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더욱 집중해야 할 바임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보다 일자리 제공에 우선하고 있다.'

대전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우선임은 앞에서 확인한 바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양분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일자리 제공 위주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이 주된 사업과 목표 시장을 제조업 분야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경쟁우위에 서거나 틈새시장을 확보하기 보다는 앞선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시장을 선점한 업체와의 경쟁력에서 뒤지게 된다. 또한 기존시장에 저가로 과잉 공급되거나, 또 다른 영세업체와의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며,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이른바 보호된 시장에서조차 자활공동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보호된 생산품과의 제2의 경쟁을 하게 되고 과잉 공급이 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사실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인 자활공동체가 시장에 진입할 때 겪었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기에 사업 초기(2년에서 최대 5년)의 대전시와 고용노동부에서 보장하는 인건비나 시설, 장비 지원이 중

단되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전시의 사회적기업은 오히려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대전시에 적합한 기타형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기존에 주도적³⁾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발휘하기에도 용이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이 확대된다면 그만큼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질'의 향상은 사회적기업의 '양'의 증가를 동반할 수 있다.

셋째, '대전시의 (예비) 사회적기업은 공적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대전시의 사회적기업은 태생적·구조적으로 부족한 자본력(독립적, 안정적, 지속적으로 기반을 조성할 동산, 부동산 등의 재원), 경영능력(영리성에 대한 집중과 선택에 다소 미온적인 사회복지조직 등 설립 및 운영주체)의 미흡, 인적자원(특히 일자리와 수익 창출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식, 기능, 기술과 경험이 다소 부족한 참여자)의 취약성이라는 한계를 안고 시작했다.

사회적기업은 시장에서의 경쟁 이전에 내부의 고민과 문제들과 씨름해야 한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취약계층 자신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취약계층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취약계층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욕과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시장에서 늘 뒤처질 수밖에 없다. 또한 빠르게 시장에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폭넓게 멀리보고 치밀하게 들여다보는 안목과 다방면의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조직의 비영리적 속성과 입장은 기능과 기술보다 열정과 헌신에 가깝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개인과 조직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시장에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자원을 동원하고 연계하는 능력과 자원 자체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만한 자원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시작부터 부딪히는 고민과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기업 인증이다. 지정과 인증은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등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전시의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이를 받아쓴다는 것은 사

3) 주도적이라는 것은 대전시의 사회복지조직이 단순한 경력과 경험의 양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최상위권의 높은 사회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회적기업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함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조금은 사회적기업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탈을 쓰고 보조금을 노리는 거짓 사회적기업(가)을 만들기도 하고, 사회 보장제도 앞에 줄 서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시 한 번 줄을 세우고 좋은 일 했다고 자족하는 사회적기업(가)을 만들기도 한다.

공적자금에 의존적이라는 것은 대전시의 사회적기업이 자발적, 자생적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의 확대를 위해 인건비 지원 등 정부 보조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기반 조성과 운영을 위한 방편으로 인증 받았다는 것과, 그로 인해 사회적기업이 그 가치와 속성은 물론 이를 위한 이익 창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기업 자신은 물론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을 의존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빠져나오기는 어려운 덫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타 지역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인증 사회적기업의 상당수가 사회적기업 인증 탈락, 폐업은 물론 사업 전환, 고용 규모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등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성의 가치’를 잃고 있다. 대전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보조금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 원래의 목적과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이들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한 ‘약’이 아니라 ‘보약(補藥)’으로서 보조금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에 내재된 ‘공동체성’, 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역량’, 이를 통해 ‘일어서는 힘(치고 나가는 힘)’과 ‘지탱하는 힘(유지하는 힘)’을 균형 잡게 해주는 ‘거름’으로서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자신이 스스로 지속되어야 ‘일 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3. 나오는 말: 대전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지구 생태환경의 이용과 자원의 사용, 시장을 통한 고용의 확대와 소득의 분배, 보건 의료와 복지, 문화여가와 교육, 주택과 교통을 비롯한 사회적 인프라의 차별 없는 향유를 시장과 자원의 지배 자본에 편중시켜 세계적인 불균형과 불평등을 일반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⁴⁾는 무차별적 개발을 통해서도 고용을 방임하고 착취하는 성장과 끊임

4) 서구사회가 불행의 늪에 빠진 1970년대 말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

없이 재생산되는 실직과 실업, 기본적 생활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소득의 양극화, 국가도 시장도 정치, 경제, 복지로도 풀지 못하는 생산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있으며, 비사회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되고 일상화된 자본주의 의식과 생활방식은 자본주의 사회에 편입된 모든 이들의 사회적 위험을 확대하고 두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와 산업화의 산물인 국가 중심과 시장 중심의 사고가 아닌 이윤의 극대화를 통제하며 개인의 이익을 공동체의 이익에 환원하는 즉, 사회가 바탕이 되어 경제 조직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고 강화하려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른바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가 그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시장지향적인 상업적 활동을 통해 실물로 구현하는 조직의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와 사회적 경제의 배경과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사회적기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복지관련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단체에서 설립(설치)하여 노동부에 인증 받거나 광역지자체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는 사회복지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과 사회적기업의 대상과 속성이 사회복지의 그것과 분리할 수 없는 합집합이며 교집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대전시의 사회적기업 현황 확인을 통해 대전시의 사회적기업이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조직에 의해 설립되고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많다'는 것, '사회복지조직 중심의 대전시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일자리 제공에 우선하고 있다'는 것, '사회복지조직의 법과 제도, 공적 자금을 대한 의존적 속성이 사회적기업에도 반영되어 공적자금이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특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으로 대전시의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조직이 지향해야 할 부분과 제쳐야 할 부분을 진단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적기업이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조직이 보다 광의적인 이해와 입장을 취해야 하며, 광역적인 관계망과 이를 가능케 하는 기능적, 기술적 노력을 실천해야 함을 보여준다.

향후 사회복지계에서 사회적기업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향해야 할 원리이자 원칙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과 사회적기업의 창의성과 다양성

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대전시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의 바탕이 됨은 물론 사회복지조직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는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토양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이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질 높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취약계층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리환경, 역사문화, 사회경제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동반 창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다.⁵⁾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은 지역사회가 얼마나 생태적인가에 달려 있다.

대전지역 사회적 경제 자원의 소중한 씨앗인 사회적기업이 건강한 뿌리를 내려 '보호된 시장'을 넘어 상호 지지하고 지원하는,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시장'으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생태적 토양이 조성되어야 한다. 대전시의 공공행정 시스템도 온실이 아닌, 화학비료, 성장촉진제, 제초제가 아닌 유기질 토양의 일부인 밑거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뿌리가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거름(자원)을 흡수(확보)해야 '사회서비스와 일자리'의 싹을 틔울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들 사회적기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질은 국가와 시장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새롭거나 부족한 시장을 확보하거나 호혜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과 비용의 지불이 가능하든 부족하든 고르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절과 양극화의 간격을 메우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좌우한다. 사회적기업의 창의성과 다양성은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였는가, 지속가능한 환경과 운영역량을 구축하였는가, 사회적 경제의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모형을 만들어 가는가,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성의 발전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대전시의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객관적인 인문사회와 자연생태, 경제적 조건과 동시에 시민과 시민사회, 시장, 공공부문의 주체적 역량에 맞춘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사회적기업을 추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전지역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소통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홍보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의

5) 사회적 기업은 영국이나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과도 맥이 통한다.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해결 해나가기 위해서는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시민의 사회서비스 욕구와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공급단체들의 참여욕구와 애로점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와 대전시 정책의 통합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의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사업 등 각 중앙 부처별 개별적(유사)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과 대전시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기업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형식적인 심의평가 위주에서 홍보, 발굴, 육성 지원으로 확대하고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정책과 사회적기업 현장의 일치를 위한 연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대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육성계획 제시, 활동지표와 매뉴얼개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고가의 장비 및 기기 대여, 공간 임대, 생산품 구매, 특성화된 아이템 개발과 품질 향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이 사회적기업의 홍보, 상담, 발굴, 육성, 지원, 사후관리와 분절, 분산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전방위적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과 사회적기업 당사자 간의 협의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선의 자원을 개발하며, 선의 자원과 사회적기업이 네트워크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대전형 사회적기업지원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당사자의 협의조정 조직인 대전사회적기업협의회가 민법상의 사단법인 등 법적근거를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직능단체와 유관단체들과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대전형 사회적기업의 범위와 범주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전형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참여와 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재화를 생산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경제 자원의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 협동조합, 지역화폐, 프로보노 자원 활동, 기업 사회공헌활동, 복지만두레 등 사회적 자본 구성과 활용을 민과 관이 공유하고, 넉넉하고 투명한 사회적 경제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단 사회적 자본이

시민을 통해 형성됨을 이해하고 행정의 공공성은 시민사회의 사회성에서 안에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

일곱째, 사회적기업가의 발굴과 양성이 필요하다. 진정성과 사업성의 잠재력을 가진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역에 뿌리 내린 양질의 인적 자원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여덟째, 사회적 경제 유통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니어클럽의 공적 사업이나 비영리조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사업이나 자생적인 호혜적 활동 등 다양한 풀뿌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회적 경제 내부의 시장을 조직하고 사회적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아홉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목적 달성 유형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제공형중 제조업 중심의 사업유형은 생산성, 시장성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여 일자리 제공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양과 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비영리 사회복지조직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을 강요하기 보다는 자신의 강점인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업을 발전시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501』, 2010. 12.
 -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 2010. 8.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1. 5. 11.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011. 5. 11.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2010. 5. 11.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go.kr>
 -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2006.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